

2026/27

항공교통안전관리자 등 항공보안법

엠북 교통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최근 법령 신설, 개정 내용 반영
- ★ 41분 완성

도서명 : 항공보안법

ISBN : 979-11-7393-290-8

발간일 : 2026-07-07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7,000원



항공보안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(p12)

제3장 공항/항공기 등의 보안(p16)

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(p38)

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(p49)

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(p60)

제7장 보칙(p67)

제8장 벌칙(p70~81)

[약어]

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

기 내는 항공기 내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 내) 개정된 내용

붉은색은 시행 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5조

1. 목적

-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
- 공항시설, 항행안전시설, 기 내 불법행위 방지, 민간항공 보안 확보 기준, 절차, 의무사항 등 규정

2. 정의

- 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항공사업법, 항공안전법, 공항시설법 따름

가. 운항중

-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 열 때까지

나. 항공운송사업자(이하 사업자)

- 면허받은 국내/국제 항공운송사업자, 등록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, 허가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

다. 항공기취급업체

- 항공기취급업 등록된 업체

라. 항공기정비업체

- 항공기정비업 등록된 업체

마. 공항상주업체

- 공항에서 영업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

시설이용 계약 맺은 개인/법인

바. 항공기내보안요원(이하 기내보안요원)

- 기 내 불법방해행위 방지 담당

사법경찰관리나 그 직무를 위해 사업자가
지명하는 자

사. 불법방해행위

: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 있거나
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음 행위

-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 납치, 납치 시도
- 항공기나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음
- 항공기, 공항, 항행안전시설 파괴, 손상

- 항공기, 보호구역 무단 침입, 운영 방해
- 범죄 목적으로 항공기, 보호구역 내로 무기 등 위해물품 반입
-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, 공항과 공항시설 내 승객, 승무원, 지상근무자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 제공
- 사람 사상, 재산/환경에 심각한 손상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 이용
-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

아. 보안검색

-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무기, 폭발물 등 위험성 있는 물건 탐지, 수색

자. 항공보안검색요원

- 승객, 휴대물품, 위탁수하물, 항공화물,
보호구역 출입 자 보안검색

차. 장비운영자

- 보안검색을 위해 항공보안장비
설치/운영하는 공항운영자, 사업자,
화물터미널운영자, 상용화주,
도심공항터미널업자

3. 국제협약의 준수

가)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
사항 외에는 다음 국제협약 따름

-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
-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
-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
-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
-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

나) 상기 국제협약 외 항공보안 관련 다른 국제협약 있으면 그에 따름

4. 국가의 책무

- 장관은 민간항공 보안 계획 수립,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유지, 공항운영자, 사업자, 항공기취급업체, 항공기정비업체, 공항상주업체, 항공여객/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승인, 실행점검, 항공보안 교육훈련계획 개발

5.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

- 공항운영자, 사업자, 항공기취급업체, 항공기정비업체, 공항상주업체, 항공여객/화물터미널운영자, 공항이용자, 장관 허가 받아 비행장이나 항행안전시설 설치한

자, 도심공항터미널업자는 국가의 항공보안
시책에 협조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

7~10조

1. 항공보안협의회

가) 국토부에 둔다

나) 협의 사항

- 항공보안 계획
-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
- 자체 보안계획 승인
- 항공보안협의회 장 인정 사항

· 국가정보원법상 대테러 사항은 제외

2.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 항공보안
사항 협의를 위해 **지방항공보안협의회** 둔다

3. **항공보안 기본계획**(이하 기본계획)

가. 장관은

- 5년마다 수립, **공항운영자등**(이하
운영자등)에 내용 통보

-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/시행

- 기본계획 수립/변경시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
협의

- 관계 기관, 단체, 전문가 의견 청취, 자료

요청

나. 운영자등

1) 공항운영자, 사업자, 항공기취급업체,
항공기정비업체, 공항상주업체,
항공여객/화물터미널운영자

2) 도심공항터미널업자

3)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다음 기관

-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(대학, 전문대 등)
- 항공기사용사업 하는 자
- 비행기, 헬리콥터를 소유, 임차해 사용하는 자
-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

4) 상용화주

다. 내용: 항공보안 종합적/장기적 추진방향 등

-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 변화/전망
- 국내 항공보안 현황, 경쟁력 강화
- 국가 항공보안정책 목표, 추진방향, 단계별

추진계획

- 항공보안 전문인력 양성, 기술 개발
- 항공보안 발전에 필요한 사항

4.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

가) 장관은 항공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

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/시행

나) 운영자들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

보안계획 수립,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 변경시